

# 學校 藥師의 役割

魯 一 協

淑明女大 教授 · 藥博

## 1. 學校 藥師의 法的根據

학교 보건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며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학교 보건법”이며 1967년 3월 30일 공포되었다.

동법 제 4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校舍 내의 空氣污染, 換氣, 採光, 照明, 음습도, 食器, 食品, 음료수, 상하수도, 변소, 오물 처리, 기타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學校醫(치과의사를 포함한다), 學校藥師 및 養護教師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68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① 18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는 學校醫 1인, 學校藥師 1인 및 養護教師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18학급 미만의 국민학교에는 學校醫 또는 學校藥師 중 1인과 養護教師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② 9학급 이상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學校醫 1인을, 또 9학급 미만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學校醫 또는 學校藥師 중 1인과 養護教師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③ 대학, 초급대학, 교육대학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에는 學校醫 1인 및 學校藥師 1인을 두며 ④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 학교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學校醫,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學校醫,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 소지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몇 가지 법조문을 통하여 보면 학교약사는 學校醫 양호교사와 더불어 학교 보건 및 학교 환경위생의 개선과 증진에 종사하는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단과 치료에 종사하는 學校醫의 직분은 뚜렷하고 또 대부분의 각급 학교에는 별씨부터 常勤 양호교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근래 새로이 부각된 학교 약사의 임무와 역할을 구획짓는 일은 시급하며 또 학교약사 제도의 성패를 위하여 긴요한 일로 생각된다.

## 2. 學校 藥師의 職務

學校醫의 주된 업무인 “학교보건”에 대하여 참고로 살펴 보면 학생 및 교직원의 ① 보건지도와 ② 보건관리가 큰 대상이며 보건지도의 목적은 건강생활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습관의 양성, 태도의 양성, 그리고 건강생활에 필요한 기능의 양성이며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하여 각급 학교 나름대로 보건교육의 교과를 통하여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관리는 건강진단, 건강상담 및 전염병 예방의 세 가지 과제에 대하여 역시 學校醫 또는 학교 치과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학교 약사는 아동학생의 건강유지와 증진, 心身의 안정, 학습능률의 향상, 건강생활의 실천력 육성을 위하여 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의 지도, 의약품 취급의 개선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그 주된 직분이다.

학교 환경위생의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병이 발생한다면 또는 학교의 급식 시설이 불비하여 식중독 사건이 대대적으로 발생한다던가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료수의 관리 소홀이 水系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校舍 내의 照度가 불량하고 騒音이 심하며 또 환기의 불량이 원인이 되어 아동학생의 피로를 심하게 하여 학습능률을 저하

시키는 사실들은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이와 같이 학교 약사의 주된 겸사업무 관리대상들은 그것이 불량하여 당장에 크게 해를 입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개선에 종사하는 학교 약사들은 담당학교의 책임자를 비롯하여 관계인에게 학교 약사업무의 인식과 깊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자세와 열의가 필요할 것이다.

문교부는 1974년 6월 21일訓令 226호로 학교 약사의 직무 한계를 규정하여 학교약사, 學校醫 및 양호교사 간의 서로의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학교 약사는 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 및 의약품 관리 업무를 맡게 되어 있으며 그 훈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의 보건계획의 수립에 있어 필요한 의견을 발표하고 지도 조언한다.

② 학교 환경위생에 관하여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학교 음료수 및 용수의 수질검사 2) 학교 내의 공기검사와 난방, 환기에 관한 검사 3) 학교의 探光 및 照明度 검사 4) 학교주변의 粉塵검사 5) 범소 기타 교내의 소독과 구충 驅鼠작업 6) 학교 급식용 식품 및 기구의 위생검사

③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毒物, 劇物과 보건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도 조언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시험, 겸사 또는 감정을 행할 수 있다.

④ 학교 약사가 전항의 직무를 행한 후에는 그 상황의 계요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학교 보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및 지도를 행한다.

### 3. 學校 藥師活動의 現況과 問題點

1973년 대한약사회 제1차 이사회(3월 14일)에서 정부예산이 허락될 때까지 무보수로 학교 약사로 배치되어 근무할 것을 결정한 것이 동기가 되어 문교부 각 시도 교육위원회 약사회 등의 협의에 따라 1973년 서울지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학교 약사의 배치를 필하였으며 그 후 각 시도의 학교 약사협의회를 구성시켜 각 보건단체와의 협의를 필하였다. 전년도의 학교약사 배치

에 이어 대한약사회는 1974년도의 중점적인 추진사업으로 각 시도별로 조도, 소음, 분진, 낙하 세균 등의 교실 내의 환경조사를 비롯하여 급수 위생, 구급의약품의 정비, 보건교육의 강화 등을 중점사업으로 전개시켰다.

예산 기재 인력의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에 미흡한 점도 있지만 서울지구의 학교 환경위생 활동은 약사의 새로운 직능을 사회에 인식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또 약사들이 취급하는 의약품에의 신뢰성을 증진 시켰으며 또 한 편으론 지역사회 개발의 역군으로서의 기여에 성공하였으나 아직 많은 문제점의 해결이 요망되는 현실이다. 첫째, 학교 약사 활동에 따르는 행정지원의 부족, 예산, 기술, 기재의 부족과 학교 약사의 무보수제의 개선 등이다. 둘째, 학교 약사 활동의 정책설정에 있어서 전시적인 사업확대를 지양하고 실현성 있는 활동계획으로 보범지역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전파 육성시키는 일들은 좋은 학교 약사 像을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째, 학교 환경위생의 기준 설정, 교실 내의 환기, 채광, 조명, 水飲場, 手洗場, 수영풀, 책상 결상을 비롯한 학습기구 그리고 학교 급식의 식품위생 등에 관한 위생기준의 설정이 요망된다. 학교 환경위생에 있어서 아직 우리 나라 설정에 알맞는 기준이 없으므로 외국의 기준을 참조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문화수준, 보건위생 개념의 정도, 시설의 평준화를 기초로 하여 특정 자료를 토대로한 위생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네째, 判定基準과 사후 조치 학교 환경위생의 판정기준이 설정되었을 때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은 사후 조치의 규제가 없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법률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 나라의 학교 약사 활동은 아직 초창기적 존재임으로 이 일을 주관하는 직업 약사 단체는 깊은 성의와 열의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간단없는 협의에 의하여 학교 약사 제도의 성과를 開花시킬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학교 약사 제도는 뜻하지 않은 위기에 봉착할까 두려워진다. 이에 대하여 관계인의 협력과 육성에의 지도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